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% 범위내에서 전형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.

제10조 제1항 중 "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"를 "도정조정위원회"로 한다.

제4장 제명 "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설치운영"을 "기금운영심의"로 하고,

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6조 및 제17조는 이를 삭제한다.

제14조(기금운영심의)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5조(심의내용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순위결정 및 용자배분
2. 지방채발행등 기금조성방법
 - 가. 기금운용계획
 - 나. 지방채발행등 기금조성사항
 - 다. 기금용자에 관한 사항
 - 라.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